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회계법」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 원칙 등 정비〉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57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회계법」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 원칙 등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 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은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Ⅲ. 검토의견

1. 「국가회계법」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 원칙 등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결산 관련 서류와 회계처리 원칙을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u>결산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u> 와 그 <u>부속명세서</u> 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_____ _____ ~~결산서~~ _____ _____ -----.
제53조의6(<u>회계처리의 원칙</u>) 기금은 <u>기업회계의 원칙</u>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6(<u>회계처리</u>) ----- <u>「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u> -----.

나. 검토의견

- 「국가회계법」은 제1조에서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10조에서 해당 법률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¹⁾
- 사학연금기금은 「국가회계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²⁾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제15조의2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제11조의 국가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음.
-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은 제25조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이라 함)의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제53조의6에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 「국가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국가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는 사학연금기금에서 적용하는 결산 및 회계처리 기준과 맞지 않음.

[「국가회계법」과 「사학연금법」의 결산 및 회계처리 기준 비교]

구분	국가회계법	사학연금법
결산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 결산 개요 • 수입지출결산 •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 성과보고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기금 수입지출결산 첨부서류 : 재원조성실적표, 성인지 기금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 재무제표 첨부서류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25조(결산) • 결산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 부속명세서
회계처리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국가회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기금의 결산과 회계처리 기준을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하고자 함.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회계법」과 「사학연금법」의 결산과 회계처리 기준 관련 조항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가회계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2008년에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적용범위에는 사학연금기금이 포함됨.

- 이러한 「국가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사학연금법」에서 사학연금기금의 결산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도 개정될 필요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1973년에 「사학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2차례의 개정으로 일부 수정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사학연금법」의 결산과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서 적용하는 결산 및 회계처리 기준과 이를 규정하는 「국가회계법」과 「사학연금법」 간 정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제53조의6(회계처리)에서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제25조(결산)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결산서의 내용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제15조의2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회계법」 적용범위 등 조항 개정 연혁]

구분	제정	개정
연혁	법률 제8636호, 2007.10.17. 제정 2009. 1. 1. 시행	법률 제9279호, 2008.12.31. 개정 2009. 1. 1. 시행
적용 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 사학연금기금 포함	(동일내용 유지)
타법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 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학연금법」 결산 및 회계처리 기준 관련 조항 개정 연혁]

구분	최초	1차 개정	2차 개정	개정안
결산	연 혁	법률 제2650호, 1973.12.20. 제정, 1974. 1. 1. 시행	법률 제17954호, 2021.3.23. 개정, 2021.3.23. 시행	—
	내 용	제25조(결산)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 당해연도 결산서(대차 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와 그 부속명세서를 • 문교부장관에게 제출	제25조(결산)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 해당 연도의 결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동일내용 유지)
회계 처리 기준	연 혁	법률 제2650호, 1973.12.20. 제정, 1974. 1. 1. 시행	법률 제6124호, 2000.1.12. 개정, 2000.1.12. 시행	법률 제9908호, 2009.12.31. 개정, 2010. 1. 1. 시행
	내 용	제23조(계리의 원칙) •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 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계리	제53조의6(계리의 원칙) •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주: 부처 명칭 변경 따른 개정 연혁은 제외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사학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특별법인 「국가회계법」에 따른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고, 회계에 관하여도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국가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사학연금법은 우선 적용 특별법인 「국가회계법」에도 불구하고, 결산 제출서류의 종류 및 회계에 대하여 기업회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정비가 필요함.